

춘천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8나55118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8나55118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11. 27 선고 2016가단1082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동수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소진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11. 27. 선고 2016가단1082 판결

변론종결 2019. 12. 11.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808,4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에 추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1,918,0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2. 31. 원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C 명의 신한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1,25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원고는 2011. 1. 3. 피고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31. 이 사건 계좌로 1,248,848,514원을 이체하였고, 원고는 2013. 1. 2.

피고에게 1,249,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2. 31. 1,2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2011. 1. 3. 이를 변제하면서 이자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 31.

1,248,848,514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2013. 1. 2. 이를 변제하고 다음 날 이자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원고가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70,000,000원 중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인 62,808,460원 2)의 경우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62,808,46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투자금이고, 대여금이 아니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이자지급약정이 없었고, 원고가 임의로 금액을 정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원고도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한 경우(비채변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관련하여 상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거나,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단기시효 3년이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0. 12. 31. 원고에게 1,2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원고로부터 2011. 1. 3. 이를 변제받으면서 이자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한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금액과 같은 금액의 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피고는 원금의 변제를 보장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원금 손실의 위험까지 수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거나, 투자의 반대급부로 주식회사 C의 운영권을 받기로 하였다는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③ 투자금을 불과 3~4일만에 회수하는 것은 통상적인 투자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가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 원 2017고단792호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3))에서 같은 법원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0. 12. 31.자 금전거래의 원인을 투자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에 어긋나는 듯한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을 제2, 6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 3)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70,000,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가 피고에게 앞서 인정한 25,000,000원을 초과하여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는 피고가 2013. 1. 3. 10,0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였다고 하나, 위 금액이 원고가 당일 이자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30,000,000원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바로 원고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의 일부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2호증의

2, 갑 제4, 13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가 원고로부터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30%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0,890,411원[= 25,000,000원 - 4,109,589원(= 1,250,000,000원 × 연 30% × 4일/365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4.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1.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비채변제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와 피고 사이 금전거래의 성격을 대여라고 인정하는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을 변제하며 지급한 25,000,000원도 대여와 관련하여 채권자인 원고가 받은 것이므로 구 이자제한법 제4조에 의하여 이자로 간주되는 점, ② 돈을 대여하면서 반드시 사전에 이자약정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고, 대여 이후에 사후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이자지급약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점, ③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에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따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인 점, ④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서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가 지급된 경우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채무자가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의 문언해석과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가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4465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아니라 10년의 민사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31871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2276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법률행위가 아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자 약정 중 강행법규인 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효로 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인 점,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그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일 뿐, 피고에게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에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신흥호 판사 지예현 판사 고철만

- 1) 원고는 2013. 1. 2. 피고로부터 받은 1,248,848,514원을 초과하는 1,249,9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에 대한 차액을 이자 명목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차액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 2) 한편, 70,000,000원에서 1,250,000,000원 및 1,248,848,514원에 관한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공제한 금액은 62,811,059원[= 70,000,000원 - 4,109,589원(= 1,250,000,000원 × 연 30% × 4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3,079,352원(= 1,248,848,514원 × 연 30% × 3일/365일)]이다.
-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피고에 대한 위 혐의에 대하여 피고가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이 같은 법원 2018노242호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